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 335호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화)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기술이전사업화)』의 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5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 1. 본 사업은 스마트 테크브릿지(Smart 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12대 국가기술전략 분야의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기술수요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해주는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연구기관) 참여가 필수인 사업입니다.
- 2. 지원분야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수요조사를 통해 확정된 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지정공모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3. 신청자격 서류, 가점 중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 제출이 불가 하오니,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기술이전사업화)으로, 스마트 테크브릿지(Smart Tech-Bridge)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공공기술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및 후속 상용화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25년 하반기 지원내용

- □ (사업목적)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소기업 공공기술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및 R&D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 □ (지원규모) 총 19.06억원 내외 (15개 과제 내외)

내역사업	구분	차수	예산	과제수
시장확대형	기술이전사업화	하반기	1,906백만원	15개

□ (지원조건) 과제별 최대 2년, 8억원 이내 (연 최대 4억원 이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시장확대형 (기술이전사업화)	최대 2년, 8억원	75% 이내	지정공모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이상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 (지원유형 및 분야)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 수요조사를 거쳐 확정된 41개 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붙임3 참조>

3. 신청자격 등

- □ (공통자격)「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최근 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주관연구개발기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공공기술을 이전
 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하는 기업
 - * 기술보증기금의 스마트Tech-Bridge플랫폼 중개를 통한 기술이전 계약체결(예정) 건만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기술수요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 해주는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참여 필수
 - * 주관기관에 기술을 이전해 주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미 참여시 선정 제외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1개 기관만 참여 가능
-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에 대해 적용하며,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 3책5공 제도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ᆉᄊᆏᄀᄀ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 □ (보안등급 분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 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 들을 반드시 확인
 -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붙임1-1] 참고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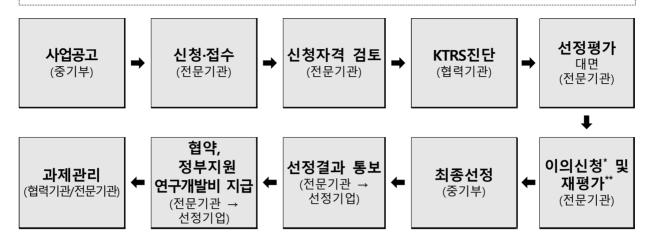
○ 과제 신청·접수기간 : '25. 6. 9.(월) ~ '25. 6. 23.(월), 18:00까지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붙임2] 참조

5.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나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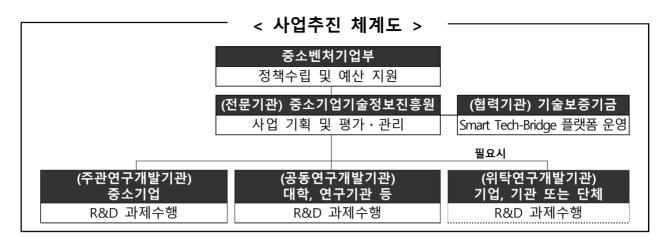
-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협력기관) 기술보증기금
-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6.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ㅇ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기술이전사업화)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추진체계



7.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협력사업실)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국번없이) 1357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담당	기관(부서)	전 화	문의사항
	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	02-2155-3662	
	서울서부기술혁신센터	02-6124-6930	
-14	인천기술혁신센터	032-420-3580	기술이전 기술매칭
│ 기술보증기금 │기술혁신센터 대표	경기기술혁신센터	031-8006-1570	KTRS진단
기술학원센터 대표 전화번호	대전기술혁신센터	042-610-2273	기술인수보증 및 사업화자금
	부산기술혁신센터	051-606-6561	연계 등
	광주기술혁신센터	062-570-7350	
	대구기술혁신센터	053-550-1450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lfqd

[붙임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1-1]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붙임2] 기술이전사업화R&D 세부 지원내용

[붙임3] 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